

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방안

이능문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

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전성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인증제도는 해당국가에 대한 산업기술력의 척도로서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운영되었으나 최근 전 시험 또는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(MRA)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기술기준까지 공동으로 개발·인정하는 표준 동등성 등 인증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 등 대외적 인 환경변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.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.

1.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현황

우리나라도 전파화경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 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수출 전용의 기기, 시험연구용 기기 등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·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 식승인, 형식검정,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1

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 을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심사하 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 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교 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.

인증 받은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증표 시를 하여야 하며 지난 8월 새로운 인증표시를 제정하여 '08 11 1일부터 적용한다 2

한편. 각 국도 전파환경 및 정보통신망, 소비 자 안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지정시험기관 에서 시험하거나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유통이 가능한 적합선언제도로 전환하고 있다.

더불어 자국 국민의 건강 · 안전과 관련된 인 증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강화하고 있는데 EU 의 경우 부적합제품 경보시스템(RAPEX:

1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구분

구분	형식승인	형식검정	형식등록	전자파적합등록
인증목적	통신망 위해 방지	인명 구조	혼신 · 간섭방지	기기 오작동 방지
대상기기	유선기기(69개)	무선기기(37개)	무선기기(62개)	정보기기(118개)
(품목수)	전화기, 모뎀 팩스 등	경보자동수신기 레이더 등	휴대폰, RFID/USN 등	PC, 프린터, 모니터 등
근거법령	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	전파법 제46조	전파법 제46조	전파법 제57조

2 인증표시 개편내용

〈개편전〉

〈개편후('08, 11, 1일 부터 적용)〉









※ '08. 11. 1일 이전 인증받은 제품은 종전의 인증표시부착이 가능하며 제품의 특성으로 색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 흑색 또는 백색 사용 가능

Rapid Alert System for non-food consumer products)을 구축·운영하여 사후관리 결과 불 량제품 발견시 전 회원국에 공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증대상의 모든 방송통신기 기에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.

또한, MRA(Mutual Recognition Agreement) 를 통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. 상대국에 SDoC 도입을 요구하는 등 FTA 등에 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.

Ⅱ. 국내 인증제도의 개편방향

시장진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부각되고 통신 · 방송의 융 합 등 기술발전 및 소비자욕구가 제품의 품질.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. 또한, 국가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상호인정협정 (MRA), FTA 등이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 서 인증제도의 글로벌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내 제도 의 주요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.

- ①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한 사전규제 완화
- ②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강구
- ③ 시험, 인증 등 적합성 평가체계의 강화

ISO 9000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제 품생산에 따른 품질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사전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. 중국. 대 만 등 외국산 저가 수입제품이 범람하는 것에 대 비 불법 · 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

3 미인증 기기 및 표본조사 현황

(단위: 건.%)

구분	'03	'04	'05	'06	'07. 9.
미인증 기기(증가율)	170(1.8)	242(42.4)	327(35.1)	514(57.2)	424
표본조사(실시율)	605(7.4)	638(7.9)	690(7.8)	724(7.2)	65

4 인증유형의 재분류





5 단계별 인증방식 개선방안

현행	1단계(2009년 하반기)	2단계(2010년 하반기)	3단계(2011년 1월)
허시스이	형식승인 인증 지정	기저 <u>기</u> 청드리	위해 · 불량률 낮은 기기
845인		지정시험등록 	자기시험등록
형식등록	인증	인증	인증
형식검정	인증	인증	인증
전자파	TI저 II 청도근	지정시험등록	위해 · 불량률 낮은 기기
적합등록	지정시험등록		자기시험등록

화해야 한다. 지나친 사전규제 완화가 규제의 해 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찾는 것이 인증제도 개편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 할 것이다.

3

III. 인증제도 개편 추진내용

1. 인증유형 재분류

기기의 위해 정도 · 안정도 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,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 이 우수한 기기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 할 필요가 있다. 정부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과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등록하는 지정시 험등록, 자체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으 로 개편하되 대상기기 적용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① 형식등록 · 검정대상 기기는 인증제 유
- ② 전자파적합등록. 형식승인대상 기기는 지 정시험등록제 도입
- ③ 불량률이 낮은 기기는 자기시험등록 허용 4

국제적으로 기술기준 등이 통합되어 있는 전 자파분야에 대해서는 지정시험등록 제도를 우 선 도입하고. 제도 정착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. 5

2. 신제품 가인증제 도입

현행 인증체계는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 이 불가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. 이로 인하여 기술개발 발전에 맞추어 기술기준이 적시에 제정되지 못 할 경우 신제품 개발 · 출시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함에 따라 공통기술기준 확인 후 인증서를 발 급하는 '신제품 가인증제' 도입이 필요하다. 가 인증에 따른 타 무선통신과의 혼신, 서비스 호 환성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- ① 주파수가 분배·할당되지 않은 무선기기 나 서비스 호환성이 보증되지 않은 유선 기기 등에 대한 처리방안
- ② 인증유효기간 설정여부와 가인증 후 본인 증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유통된 기기 처 리방안

3.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

방송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의 일부가 되 면서 이와 더불어 배터리 폭발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 일 수 있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기 이 용의 안전 확보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. 예를 들어 전기안전기준 을 모든 방송통신기기에,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소비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기로의 단계적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.6

아울러, 정보기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적합성기준을 무선기기로 확대하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무선랜. 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 선기기에 우선 적용하고,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. 7

또한 업체가 부적합을 사전 인지한 경우 이 를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부적합정보 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합 기기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 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4.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

규제완화에 따른 시험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제기준(ISO/IEC)에 부합하는 시 험인증기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관은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품질관리의 적절한 동기부여도 필요하다. 더불어 경미한 위 반과 중대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중대한 위반 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 하는 등 관리 · 감독을 강화하여 인증 및 시험업 무의 국내외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.

6 정보통신기기 인증기준 강화방안

○ 전기안전기준: 유선기기에만 적용 ⇒ 정보·무선기기 추가

○ 전자파흡수율기준 : 휴대폰에만 적용 ⇒ 휴대용 무선기기로 점진 확대

7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기준 도입방안

단계별	1단계	2단계	3단계
대상 기기	무선랜, 블루투스	소출력 무선기기, 수신기	모든 무선기기

더불어 거대 외국 시험 · 인증기관에 대응하 기 위해 국내 지정시험기관 시험설비 인프라 확 충을 지원하고 자발적 M&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.

V. 맺음말

미국, EU 등 FTA와 연계하여 인증서를 상 호 인정하는 2단계 MRA 체결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업체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 및 소비 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강화, 시장감시 활동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 증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.

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 가 지난 9월 11일 개최되었으며 현재 공청회 개 최결과 보완 및 시행령,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 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체, 소 비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. 인증제도가 더 이상 기업규제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소중한 전파자원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 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 갈 예정이다. **KTO**A